

## 第3次 改正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 (URC 522)에 관한 小考

朴 成 喆\*

### 目 次

|                                  |                             |
|----------------------------------|-----------------------------|
| I. 序 論                           | III. 改正 URC의 主要內容과 問題點      |
| II. 推尋決濟方式의 意義 및<br>URC上의 推尋決濟方式 | 1. 改正背景 및 目的                |
| 1. 推尋決濟方式의 意義                    | 2. 改正 URC 522의 主要內容과<br>問題點 |
| 2. URC上의 推尋決濟方式                  | IV. 結論 및 要約                 |

### I. 序 論

輸出入去來의 代金決濟方式으로 貨換信用狀에 의한 方式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推尋決濟方式은 送金方式에서 問題가 되었던 輸入商의 商業危險을 克服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決濟方式이다. 우리 나라 貿易에 있어서 D/A·D/P 去來는 80년대 후반부터 거래비중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하여 貿易實務에서의 그 重要性이 證明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推尋決濟去來는 信用狀

\* 慶南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1)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에 1985년에 10.1%이었던 것이 1992년의 경우 26.6%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대금결제방식으로 D/A나 D/P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조사대상기업의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D/A나 D/P에 의한 대금결제방법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한 상공회의소, 국제무역거래유형의 변화와 대응방안, 1994. 12, p. 123).

去來에 적용되는 信用狀統一規則과 같은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s)을 國際商業會議所에서 제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行爲地國家의 어음법 및 각종 국내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sup>2)</sup> 있어 推尋決濟當事者が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을 채택하더라도 當事者들의 國內法規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限界가 따른다.

이와 같이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이 信用狀統一規則처럼 普遍化되지 않고 있는 것은 推尋去來制度가 信用狀去來와 같이 貿易去來에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 貿易外 一般去來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制度이므로 각국의 民法이나 商法에서 強行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推尋去來에 관한 商慣習을 國際的으로 統一化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信用狀去來도 역시 어음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음의 推尋에 관한 國際的인 統一規則을 마련하여 普遍化·一般化함으로써 무역대금의 結제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法律上的 衝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推尋에 관한 國際的인 統一規則은 國際商業會議所가 1956년에 “商業어음의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하여 1967년에 1차 개정을 거쳐 2차로 1978년에는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명칭을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UR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으로 공표하여 1979년부터 1995년 12월 현재까지 각국에서 사용해 오고 있다.<sup>3)</sup> 그 이후 여러 가지 변화된 國際商慣習을 수용하기 위하여 1993년 3월부터 國際商業會議所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1995년 7월 개정 완료한 최종안(final draft)을 배포하고 1996년 1월 1일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2) ICC,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Pub. No. 322. 총칙조항에서 국가, 주, 또는 지방의 법률에 반대되지 않는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차 개정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안)에서도 제1조의 Application of URC 522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 6월 1일자 전국은행협회 이사회에서 1978년 개정규칙을 1979년 7월 2일자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3차 改正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의 改正背景과 目的을 개관하고 主要 改正內容을 舊 規則과 比較檢討해 봄으로써 새로운 統一規則의 實務適用上의 問題點을 事前에 點檢해 보고자 한다.

## II. 推尋決濟方式의 意義 및 URC上의 推尋決濟方式

### 1. 推尋決濟方式의 意義

國際物品賣買代金, 즉 輸出入代金の 決濟方式은 送金方式에 의한 代金決濟, 推尋方式에 의한 代金決濟, 信用狀方式에 의한 代金決濟의 3가지 方式으로 분류할 수 있다.

送金方式에 의한 代金決濟는 輸出商이 物品을 船積하기 전에 輸入商이 그 代金の 전액을 送金하거나<sup>4)</sup> 輸出商이 物品 또는 書類를 引渡할 때 輸入商이 스스로 代金を 外貨로 지급하는 代金償還渡方式<sup>5)</sup>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送金方式에 의한 代金決濟는 送金過程에서의 危險負擔 등으로 인하여 貿易實務에서 見本代金の 청구나 少額注文賣買와 같은 少額去來에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推尋<sup>6)</sup>方式에 의한 代金決濟란 無信用狀去來方式으로서 賣買契約 當事者間에 체결된 賣買契約에 의해 輸出商이 발행한 貨換어음에 의하여 輸出入代金

4) 이러한 송금방식을 단순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이라고 한다.

5) 이러한 방법에는 현물상환도(C.O.D.: Cash on Delivery) 방식과 서류상환도(C.A.D.: Cash against Documents) 방식이 있다.

6) URC 제2조 a항에 나와 있는 추심의 정의: 추심이란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① 지급이나 인수를 하기 위하여, ② 지급이나 인수에 대해서 서류를 인도하거나, ③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을 결제하는 방식이다.<sup>7)</sup> 推尋決濟方式은 輸出商이 먼저 賣買契約에 일치하는 物品을 船積하고 賣買契約에서 정한 船積書類<sup>8)</sup>를 준비하여 輸入商을 支給人으로 하는 貨換어음을 발행하여 輸出商의 去來銀行에 推尋을 依賴하면 이 銀行이 輸入商의 去來銀行에 다시 推尋을 要請하여 최종적으로 輸入商이 貨換어음에 대해서 代金を 決濟해 주는 방식이다. 이 때 輸入商은 支給을 하기 전에 書類를 檢討할 權利는 가지지만 推尋依賴人이 事前에 授權하지 않은 物品의 事前檢査나 試驗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銀行은 輸入商이 평소의 去來關係가 있고 중요한 顧客으로서 信賴하여(in trust) 단지 檢査의 目的으로 書類를 引渡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全的으로 銀行의 危險과 責任이다.<sup>9)</sup> 경우에 따라서 銀行은 貸渡證書(Trust Receipt)를 징구하고 書類를 引渡해 주는 경우가 있다.<sup>10)</sup> 이 역시 推尋銀行의 危險과 責任하에 행해지며, 推尋依賴銀行이나 推尋依賴人에 대해서는 아무런 權利를 가지지 못하고, 支給人의 支給不履行時 推尋銀行은 契約의 違反(Breach of Contract)으로 推尋依賴銀行에 대해서 補償해야 한다. 이러한 推尋決濟方式은 信用狀方式과는 달리 介入하는 銀行이 代金の 支給에 대해서 保障해 주는 것이 아니라 賣買當事者間의 相互 信用에 기초하여 代金決濟가 이루어진다. 推尋去來에 개입하는 銀行은 善意의 管理者로서 단순히 仲介役을 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推尋去來는 ① 輸出商과 輸入商이 잘 알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경우, ② 輸入商의 支拂意圖와 支拂能力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③ 輸入國의 狀況이 政治的, 經濟的, 法的으로 安定的인 條件일 경우, ④ 輸入地 國家의 外換統制나 이와 유사한 制限에 의해 國際的인 支給이 방해받지 않을 경우에 이용될

7) 이와 같이 추심에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가 첨부되는 경우에 換回추심(Documentary Collections)이라고 하고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는 추심,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만의 추심은 무담보추심(Clean Collection)이라고 한다.

8) 여기서 선적서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요구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9) Midland Bank Ltd. v. Estcheap Dried Fruit Co. [1962] 1 Lloyd's Rep. 359.

10) C.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1990, p. 398.

수 있다.<sup>11)</sup>

推尋去來方式은 信用狀去來와 비교해 볼 때 信用狀去來를 輸出業者에게 약간 유리한 制度라고 본다면 推尋去來는 輸入業者에게 매우 유리한 去來이다. 즉, 輸入業者는 物品의 引受시까지 아무런 資金負擔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契約物品을 處分하여 物品代金으로 充當할 수 있기 때문에 資金壓迫이나 利子負擔을 덜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輸出業者도 상대방의 信用이 확실한 경우에는 無信用狀 方式에 의한 去來에 의해 價格競爭戰略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推尋前 買入制度를 이용하여 輸出代金を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를 통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推尋決濟方式에도 換어음의 支給人이 어음代金の 지급을 하여야 書類<sup>12)</sup>를 引渡해 주는 支給渡方式(D/P: Document against Payment)과 支給人이 어음의 引受를 하면 船積書類를 引渡해 주는 引受渡方式(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 있다.<sup>13)</sup>

## 2. URC上的 推尋決濟方式

### (1) D/P 方式

D/P(Document against Payment) 方式이란 輸出商이 輸入商과의 賣買契約에 따라 契約物品을 자기 責任하에서 船積하고 구비된 船積書類에 一覽出給 어음을 발행·첨부하여 자기 去來銀行을 통하여 輸入國의 外國換銀行 앞으

11) Helbling, J. et al, *Guide to Documentary Transaction in Foreign Trade*, Union bank of Switzerland, 1985, p. 70.

12) 서류에는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와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가 있다. 상업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및 금융서류가 아닌 일체의 서류를 말하고, 금융서류는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또는 금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사한 증서를 의미한다.

13) 미국 통일상법전에 따르면, 어음의 제시 후 3일내에 지불되어지는 경우는 지급(Payment)조건, 어음의 제시 후 3일 이후에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수(Acceptance)조건으로 본다(UCC § 4-503 (1)).

로 어음대금을 推尋하면 推尋依頼를 받은 수입국측 推尋銀行은 輸入商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을 一覽支給받는 조건으로 船積書類를 引渡해 주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信用狀去來에서와 같이 輸出商이 去來銀行에 船積書類의 買入을 통하여 즉시 輸出代金を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船積後 船積書類의 推尋過程을 거쳐 대금을 회수하므로 선적후 수입상이 代金を 結제할 때까지 모든 危險을 輸出商이 부담하지만 代金支給을 받지 않고는 船積書類를 引渡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다. 輸入商의 입장에서는 契約物品의 引受시까지 자금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物品을 引受하고 代金を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안전한 거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D/P 去來에는 D/P at sight와 D/P usance가 있다. D/P at sight는 본질적인 의미의 D/P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船積書類가 輸入地의 銀行에 도착한 즉시 物品代金を 徵收하고 船積書類를 引渡해 주는 去來이며, D/P usance는 書類가 도착한 후 Usance 기간의 마지막 일자에 代金を 징수하고 船積書類를 인도해 준다. 예를 들어 D/P at 60 days after B/L date이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船積書類가 B/L 일자로부터 60일 이후에 引渡되어진다. 물론 60일 이후에 船積書類 引渡시 物品代金を 징수한다. 이와 같은 D/P usance가 후술할 D/A 거래와 다른 점은 D/A 거래에서는 船積書類를 輸入地의 銀行에 도착하는 즉시 引受(Acceptance)하고 契約物品을 引受(Take a Delivery)할 수 있지만 D/P usance 去來에서는 一定期間이 경과한 후에 船積書類를 引受할 수 있다는 것이다.

D/P at sight에서는 船積書類가 도착하는 즉시 輸入商이 物品代金の 決済를 해야 하므로 資金負擔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契約物品이 아직 到着하지 않았지만 船積書類가 먼저 到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物品의 도착시기와 船積書類의 到着시기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去來方法이 D/P usance라고 할 수 있다.

## (2) D/A 方式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方式이란 物品代金の 推尋過程은 D/P 方式과 동일하나 輸出商이 반드시 期限附 換어음을 發行하고 이를 去來 銀行을 통하여 推尋받은 輸入商의 引受行爲<sup>14)</sup>에 대해 船積書類를 引渡해 주는 決濟方式이다. 이는 輸入商이 書類 引受의 뜻만 표시하면 書類를 引渡해 주는 일종의 외상거래형태로서 輸出商은 어음상의 權利<sup>15)</sup> 이외의 物的 擔保를 가지지 못하며 어음의 不渡時에 危險에 직면할 수가 있다.<sup>16)</sup>

D/P 方式과 D/A 方式의 차이점은 D/P 方式은 일람불어음이나 기한부어음이 발행될 수 있으나 D/A 方式은 반드시 기한부어음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 Ⅲ. 改正 URC 522의 主要內容과 問題點

### 1. 改正 背景 및 目的

1979년 1월 1일 이후로 各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URC)은 1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 동안 國際商業會議所에서는 여러 가지 實務慣行과 技術의 발달에 따른 變化를 수용하기 위해서 관련 國際規則의 改正作業을 해 왔다. 1990년의 Incoterms 改正 및 1993년의 信用狀統一規則의 改正에 이어 1993년 3월부터 1979년에 발효한 ICC 발행 No. 322인 推

14) 인수행위는 어음행위의 하나로서 어음상에 “accepted”라고 쓰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15) 어음상의 권리라는 것은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상학상의 용어로서 어음법상으로는 어음상의 청구권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어음상의 권리는 환어음의 인수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청구권(어음법 제28조 및 제78조),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어음법 제47조 및 제77조)이 있다.

16) 이러한 위험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해서 커버되고 있다. 즉, 외국환은행이 추심전에 지급한 환어음에 대해서 수출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어음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출어음보험제도가 있다.

尋에 관한 統一規則의 改正作業을 위해 작업부(working party)를 설치하고 25개국 이상의 國家에서 받은 意見을 綜合檢討하여 새로운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을 마련하게 되었다.

## 2. 改正 URC 522의 主要內容과 問題點

### (1) URC 522의 適用範圍

이 規則의 適用을 받기 위해서는 推尋指示書(Collection Instruction)에 명시적으로 準據文言<sup>17)</sup>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의 다른 명시적인 합의가 없거나 또는 국가, 주 또는 지방의 法律 및/또는 위반할 수 없는 規則의 규정에 반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URC 522에서 정하고 있다.<sup>18)</sup> 準據文言의 삽입조건은 1982년 12월 7일에 ICC에서 사용을 권고한 標準 推尋依頼書(Collection Order)<sup>19)</sup> 樣式에 명시적으로 인쇄되어 있었으며, 實務에서도 準據文言이 삽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解釋해 왔으나, URC 322<sup>20)</sup>規則 자체에는 명시적인 條項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改正作業에서 이러한 內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sup>21)</sup>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은 信用狀統一規則처럼 國際적으로 一般化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强行法規가 아니라 任意法規이기 때문에 이러한 準據文言의 삽입이 없는 경우에 當事者間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더욱 높다. 그래서 이번에 改正되는 URC 522에서는 두 개 條項에 걸쳐 반복적으로 準據文言의 삽입을 規定함으로써 그 重要性을 더욱 強調하고 있다. 실제로 어음의 推尋에 대해서는 각국의 民法이나 商法에서 별도의 規定<sup>22)</sup>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信用狀統一規則처럼 광범위한 國

17) 준거문언 예시: The collection is subject to URC 522.

18) URC Art. 1.a.

19) Document No. 470-27/1 : 구 규칙 URC 322에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로 사용되던 용어가 신 규칙에서는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로 변경되면서 추심지시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함.

20) URC 322의 총칙 및 정의 A항 규정.

21) URC 522. Art. 1 & Art. 4.



際的인 統一規則의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의 法이 이와 같은 換어음의 推尋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URC는 參考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信用狀去來도 換어음의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換어음의 推尋에 관하여 國際的인 標準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URC 522 제1조 b항에서는 推尋去來에 介入하는 銀行의 地位를 規定하고 있다.<sup>23)</sup> 推尋指示書를 받은 銀行은 推尋指示에 따라야 할 強行的인 義務는 없으며 銀行이 自己 責任하에 任意的으로 推尋指示에 따를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c항에서는 만약에 그러한 推尋指示를 따르지 않기로 決定한 경우에는 推尋指示를 송부해 온 當事者에게 지체없이 電信이나 기타 긴급한 手段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義務化하고 있다. 위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參與 銀行의 지위문제는 URC 322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던 내용으로 推尋이나 指示를 받은 자가 자동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추가되었다.<sup>24)</sup> 이는 信用狀去來에서 通知銀行의 地位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sup>25)</sup> 그리고 推尋指示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에 종전 規則 URC 322에서는 지체없이 通知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URC 522에서는 通知手段을 電信이나 긴급한 通信手段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通知方法의 모호성을 확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22) 각국의 어음법. ① 미국 : 통일상법전(UCC) 제3편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part 1에서 part 6에 걸쳐 일반조항과 정의, 이전, 매입, 배서, 당사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추심에 관해서는 제4편 Bank Deposits and Collections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영국 : 종래의 관습법이던 것을 1882년에 정리하여 어음법(Bill of Exchange Act)으로 체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독일 : 1933년에 어음법이 제정되어 193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④ 한국 : 해방후 법률 제1001호로 어음법이 공포되어 196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23) URC 522 Art. 1.b: Banks shall have no obligation to handle either a collection or any collection instruction or subsequent related instructions.

24) ICC Comments on URC 522.

25)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은 통지의뢰를 받고 통지여부를 자기 책임하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UCP Art. 7).

26) 구 규칙에서는 지체없이 통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규칙에 위반이 되지 않았다.

## (2) 推尋의 定義 및 書類에 관한 規定

推尋은 접수한 指示에 따라 ① 支給 및/또는 引受를 위하여, ② 支給 및/또는 引受에 대하여 書類를 引渡하기 위하여, ③ 기타의 제조건으로 書類를 引渡하기 위하여 銀行에 의한 書類의 取扱을 의미한다.<sup>27)</sup>고 規定하여 URC 322<sup>28)</sup>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支給 및/또는 引受에 대하여 商業書類(Commercial Documents)를 引渡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書類/Documents)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商業書類와 金融書類의 引渡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③항의 내용과도 統一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商業書類”를 “書類”로 變更·補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URC 522에서 書類에 관한 規定도 實務慣習의 반영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URC 322에서 金融書類로 분류 포함되어 있던 支給領收證(Payment Receipt)이 삭제되었다.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는 각국의 有價證券 關聯法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流通性 有價證券으로서 共通點을 가지고 있지만 支給領收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支給手段으로서 汎用性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삭제시켰다.

또한 手票推尋의 경우에도 商業書類를 수반하지 않는 無擔保推尋에 이용되기는 하지만 각국마다(어떤 국가내에서는 지역마다) 慣習이 相異하기 때문에 별도의 項目으로 설정하는데 不適合했다<sup>29)</sup>고 ICC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手票推尋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當事者들은 當事者國間에 相異한 慣習을 調整하기 위한 事前 努力이 요구된다.

한편, Incoterms와 UCP에서 새롭게 도입한 EDI를 URC에도 導入하려고 했으나 EDI에는 아직 많은 不確實性이 있으며 또한 法的인 問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改正作業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sup>30)</sup> 이는 오늘날 많은 貿

27) URC 522. Art. 2.a.

28) URC 322. 총칙 및 정의편 B.1.

29) ICC Comments on URC 522.

30) ICC Comments on URC 522.

易關聯 書類가 EDI化되고 있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國際規則의 改正作業이 손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볼 때 適用可能한 範圍내에서 EDI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는 融通性있는 내용으로 한 條項이 追加되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商業書類의 種類로서 URC 322에서 船積書類(Shipping Documents)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Incoterms나 UCP에서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概念인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sup>31)</sup>로 變更했다. 이는 運送手段을 주로 海上 運送에 의존했던 당시에는 船積書類라는 용어가 별다른 問題가 없었지만 오늘날 컨테이너를 이용한 複合運送 등 運送手段이 多樣化되면서 運送書類라는 概念이 더욱 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 (3) 推尋關係當事者

推尋去來當事者에는 推尋依頼人(Principal), 推尋依頼銀行(Remitting Bank), 推尋銀行(Collecting Bank), 提示銀行(Presenting Bank)이 있다. URC에서는 支給人(Drawee)을 當事者의 概念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項目으로 推尋指示書에 따라 提示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를 支給人은 결국 推尋過程에 介入될 수 있지만 支給人은 推尋過程의 初期 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當事者와는 別途로 定義하고 있다고 ICC는 Comment하고 있다. 그러나 推尋過程에서 볼 때 支給人의 重要性은 매우 높기 때문에<sup>32)</sup> 當事者에 포함시키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妥當한 것으로 여겨진다.

31) UCP 500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서류로는 해상선하증권, 용선계약부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우편수령증, 특사수령증, 운송주선인 발행 운송서류 등이 있다.

32) 추심거래에서 지급인의 지급상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최종지급인인 개설의뢰인의 지급상태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의뢰인이 지급불능이 되더라도 개설은행의 지급약정은 계속 유효하다.

#### (4) 推尋指示書

URC 522에서는 종전의 URC 322에서 推尋依頼書(Collection Order)로 사용하던 용어를 좀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推尋指示書(Collection Instruction)로 바꾸고 推尋指示書의 要件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모든 推尋書類는 반드시 推尋指示書を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이 推尋指示書에는 반드시 본 推尋規則에 따른다는 準據文言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推尋銀行은 단지 이 推尋指示書에 따라서 行動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推尋銀行은 推尋指示書에서 달리 授權하지 아니한 경우에 推尋을 送付해 온 當事者/銀行 이외의 어떠한 當事者/銀行으로부터의 모든 指示를 무시한다<sup>33)</sup>고 특별히 規定하고 있다.<sup>34)</sup> 이는 소위 말하는 Global Collection<sup>35)</sup>에 의해 推尋銀行에게 追加의인 責任을 지우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URC 522 제25조에서 規定하고 있는 豫備支給人(Case-of-Need)으로부터의 指示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推尋依頼人에 의해 支給拒絶이나 引受拒絶時에 豫備支給人으로 指名되어 있는 자로부터 豫備支給人이 授權하고 있는 權限內에서의 적절한 指示는 받을 수 있다.<sup>36)</sup>

推尋銀行은 指示를 推尋指示書가 아닌 어떠한 書類에서도 찾지 아니하며 書類를 檢査할 義務도 없다. 즉, 별도의 推尋指示書만 검사하면 되지 다른 書類에서 指示 內容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個別書類에 그러한 指示가 있더라도 銀行은 그러한 指示는 무시한다.

이러한 推尋指示書에는 다음의 內容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sup>37)</sup>

33) URC 522 Art. 4.a.3.

34) URC 522 Art. 4.a.3: URC 522에서 신규로 추가됨.

35) Global Collection이란 세계 일부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습으로 예를 들면 극동지역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한 추심과정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 의해 Monitor되고 있는 경우에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이 아닌 미국에 있는 추심을 Monitor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지시나 질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36) ICC Comments on URC 522.

37) URC 522 Art. 4.b: URC 522에서 신규 추가된 조항.

고 규정하고 있다.

㉠ 推尋을 송부해 온 銀行의 상세 정보: 은행의 완전한 상호, 우편 및 SWIFT<sup>38)</sup>주소, 텔렉스, 전화, FAX 번호 및 참조사항.

㉡ 推尋依賴人의 詳細情報 : 완전한 이름, 우편주소, 가능한 경우의 텔렉스, 전화, FAX 번호.

㉢ 支給人의 詳細情報 : 완전한 이름, 우편주소 또는 국내의 제시가 이루어지는 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텔렉스, 전화, FAX 번호.

㉣ 提示銀行이 있다면 提示銀行의 詳細情報 : 완전한 상호, 우편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텔렉스, 전화, FAX 번호.

㉤ 推尋金額과 通貨單位

㉥ 同封된 書類目錄과 각 書類의 통수.

㉦ 支給 및 引受의 條件 ; 서류의 인도조건으로 지급, 인수, 기타의 조건임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推尋手數料의 拋棄與否.

㉨ 推尋利子에 대한 內容<sup>39)</sup>(이자율, 이자계산기간, 계산의 기준: 1년을 360일로 할 것인지 365일로 할 것인지와 같은 것) 및 추심이자의 포기여부.

㉩ 支給의 方法 및 支給通知의 樣式

㉪ 支給拒絶, 引受拒絶 및/또는 다른 指示와 不一致한 경우에 대한 指示.

## (5) 提示

提示는 提示銀行이 指示받은 대로 그리고 地方銀行의 慣習에 따라 書類를 支給人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節次를 말한다.<sup>40)</sup> 提示와 관련하여 각국마다

38)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

39) D/A 거래에 관련되는 이자는 다음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D/A 어음에서 어음의 만기까지의 이자, 2) 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어음의 만기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3)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추심의뢰인이 지시한 곳까지 자금이 도착하는 날까지의 이자, 즉 추심의뢰인이 수령하는 날까지의 이자.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이자의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것이다.

다른 법규정과 상이한 地方銀行의 慣習때문에 定義를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매우 一般的인 定義를 내림과 동시에 각 地方銀行의 慣習에 따르고 규정함으로써 銀行의 慣行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提示와 관련하여 또는 書類가 提示되어야 하는 期間이나 기타의 行爲가 支給人에 의해 취해져야 하는 期間과 관련하여 “최초의”(first), “신속한”(prompt), “즉시의”(immediate)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規定하고, 만약에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1)</sup> 이는 UCP 500 제46조에서 船積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用語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간과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提示銀行이 一覽支給을 위한 書類의 提示나 引受를 위한 書類의 提示는 지체없이(without delay)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5~7일 이내의 銀行營業日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을 개정작업부에서 검토했으나 확정일자자의 삽입은 규칙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UCP 500에서도 별다른 정의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銀行의 慣習에 의존하기로 했다고 하고<sup>42)</sup> 있으나 이는 地域마다 銀行의 慣習이 다른 경우에 問題가 발생할 수 있는 餘地를 남기고 있다.

推尋依賴銀行은 推尋銀行으로서 推尋依賴人이 推尋指示書에서 지명한 銀行을 이용해야 하며, 만약에 그러한 指示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選擇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3)</sup>

## (6) 商業書類의 引渡

商業書類의 引渡에 대해서 장래의 확정일 支給條件의 換어음을 포함하고

40) URC 522 Art. 5.a: 신규

41) URC 522 Art. 5.b: 신규

42) ICC Comments on URC 522.

43) URC 522 Art. 5.d.

있는 경우에 D/P 條件인지 D/A 條件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D/P 條件으로만 商業書類가 引渡되어질 수 있다.<sup>44)</sup> 만약에 推尋이 장래의 확정일 支給條件의 換어음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D/P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면 商業書類는 반드시 支給에 대해서만 引渡되어질 수 있다. 즉, 書類의 到着 즉시 引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換어음의 만기일에 가서 支給을 받고 書類가 引渡되어진다. 이 경우에 支給의 遲延에 의한 書類의 引渡遲延에 대해서는 推尋銀行은 어떠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즉, 이 條項은 D/P Usance 去來를 종전의 規則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物品은 到着港口에 먼저 도착하여 있고, 書類는 支給을 기다리는 銀行에 의해 所有되고 있기 때문에 物品이 輸入商에게 引渡되지 못하고 부두에서 危險에 노출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改正 URC에서는 推尋은 商業書類가 支給에 대해서 引渡되어진다는 指示와 함께 장래 확정일 支給條件의 換어음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商業書類의 引渡條件이 D/P인지 D/A인지를 판단하는데 실제로 推尋指示를 받는 銀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書類의 引渡條件에 대한 指示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指示文句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sup>46)</sup>

### (7) 義務와 責任

推尋去來에 參與하는 銀行은 信義誠實에 따라 行動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47)</sup> 여기서 상당주의의 정도는 地方銀行의 慣習이나 地方의 慣習

44) URC 522 Art. 7.b.

45) URC 522 Art. 7.a.

46) D/A로 보아야 할 지시나 어음조건 \* deliver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60 days \* 30 days after arrival of the cargo \* D/A 30 days B/L \* at 30 days afer sight \* 30 days after B/L date.  
D/P로 보아야 할 지시나 어음 조건 \* 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at sight \* 60 days D/P(D/P Usance) \* at sight on arrival of vessel.

에 따라서 행하면 충분하다.

推尋去來는 信用狀去來와 마찬가지로 銀行은 書類에 의한 去來를 하는 것이 物品에 의한 去來나 기초하는 어떠한 契約에 의한 去來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物品은 當該銀行의 事前 합의없이 銀行의 주소로 直接 發送되거나 銀行 또는 銀行의 指示人에게로 託送되어서는 안된다.<sup>48)</sup> 이렇게 發送되거나 託送된 경우에 銀行은 物品을 引受할 義務가 없으며, 物品을 發送한 當事者의 危險과 責任으로 남는다. 銀行은 이러한 物品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할 義務가 없으며, 指示와 관계없이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그 결과나 物品의 상태에 대해서는 責任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지체없이 推尋을 송부해 온 銀行에게 해야 한다.<sup>49)</sup> 물론 이 때 發生한 手數料나 비용은 推尋을 송부한 當事者의 부담이다.

物品을 銀行 앞으로 직접 發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송되어 온 物品에 대해서 支給人이 支給이나 引受 또는 기타의 條件으로 支拂하는 경우에는 推尋銀行은 物品을 引渡할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推尋銀行은 物品과 관련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 있으므로 잘못 引渡하는 결과를 초래할 危險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推尋依賴銀行의 指示에 따라 또는 銀行 앞으로 송부되어 온 物品의 引渡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損害와 費用에 대해서 推尋依賴銀行이 補償(Indemnify)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1)</sup>

### (8) 銀行의 免責

URC에서는 推尋去來에 參與하는 銀行의 負擔을 줄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危險과 費用에 대해서 銀行의 免責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시받은 當事者의 行爲에 대한 免責, 接受한 書類에 대한 免責, 書類의 有效性에 대

---

47) URC 522 Art. 9.

48) URC 522 Art. 10.a.

49) URC 522 Art. 10.b: 신규

50) URC 522 Art. 10.e.1.

51) URC 522 Art. 10.e.2.



한 免責, 遲延·運送중 損失과 翻譯에 대한 免責, 不可抗力에 대한 免責이 그것이다.

① 指示받은 當事者の 行爲에 대한 免責

推尋依賴人の 指示를 履行할 目的으로 다른 銀行이나 기타 銀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銀行은 推尋依賴人の 費用과 危險으로 그렇게 한다.<sup>52)</sup> 그리고 銀行은 자기가 선택한 다른 銀行이 자기가 送付한 指示를 履行하지 않더라도 송부한 銀行은 義務나 責任이 없으며,<sup>53)</sup> 指示當事者는 지시받은 當事者가 外國의 法과 慣習에 따라 부과된 義務나 責任에 대해서도 補償해 주어야 한다. 이 條項의 目的은 말할 것도 없이 推尋去來에서 있을 수 있는 基本的인 危險을 指示當事者에게 賦課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接受한 書類에 대한 免責

銀行은 推尋指示書에 기재된 대로 書類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누락된 書類나 추가된 書類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전신이나 긴급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推尋指示를 送付한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URC 322에서는 이러한 경우 즉시(immediately) 通知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체없이(without delay)로 變更하고 또한 通知時에는 電信이나 긴급한 通信手段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規則의 전체 條項에서 通知方法의 一元化를 기하고 通知方法을 둘러싼 紛爭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

推尋依賴銀行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推尋指示書에 個別書類의 種類를 기재하고 그들의 통수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書類가 推尋指示書에 실제로 기재된 대로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推尋依賴銀行은 그 權利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sup>54)</sup> 있기 때문에 書類의 管理에 대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實務에서는 推尋指示書を 송부한 推尋依賴銀行은 相對方銀行이 推尋指示書에 포함된 書類가 完全하게

52) URC 522 Art. 11.a.

53) URC 522 Art. 11.b: 신규

54) URC 522 Art. 12.b: 신규

到着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確認 또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必要性이 있다고 하겠다.

③ 書類의 有效性에 대한 免責

銀行은 모든 書類의 樣式, 充分性, 正確性, 眞正性, 偽造 또는 法的 效力에 대하여, 또는 書類에 규정되었거나 이에 추가된 一般條件이나 特殊條件에 대하여 아무런 義務나 責任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書類에 나타나 있는 物品의 明細, 數量, 品質, 狀態, 包裝, 引渡, 價額, 또는 物品의 존재에 대해서도 義務나 責任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物品의 託送人, 運送人, 運送周旋人, 受荷人, 保險者 또는 기타 當事者의 誠實性, 作爲나 不作爲, 支給能力, 債務履行 또는 財政狀態에 대해서도 아무런 義務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sup>55)</sup>고 새롭게 규정을 추가했다.

이 條項은 信用狀統一規則에서 銀行의 免責으로 규정하고<sup>56)</sup>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條項이다. 즉, 信用狀去來에 참여하는 모든 銀行은 信用狀이 개설된 때부터 최종 買入, 支給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종 書類의 效力에 대해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推尋去來도 銀行의 立場에서 볼 때 완전한 書類의 去來이기 때문에 書類의 有效性에 대해서 免責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貿易慣行이나 物品의 特性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銀行에게 이러한 각종 貿易書類의 기재내용에 대한 眞僞與否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推尋去來에 참여하는 銀行은 推尋指示書에 기재되어 있는 書類가 종류 및 통수에 있어서 일치하는가의 與否만 檢討하면 充分하고 書類의 內容을 검토할 義務는 없다.

④ 遲延·運送중 損失과 翻譯에 대한 免責

銀行은 推尋과 관련한 모든 通報나 書類의 送達遲延과 運送중의 損失과 技術的인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免

55) URC 522 Art. 13: 신규

56) UCP 500 Art. 15.

責된다. URC 522에서는 指示의 確認을 하기 위해서 遲延이 발생한 경우에도 銀行의 免責으로 追加하였다.<sup>57)</sup> 즉, 불명확한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銀行이 相當期間을 享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해서도 銀行은 면책된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不明確한 指示가 어떤 것인지와 확인소요일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銀行의 裁量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銀行의 濫用이 우려된다. 즉, 銀行의 過失로 遲延이 발생했다라도 본 條項을 援用하고자 하는 意圖로 불필요한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問題點을 지적할 수 있다.

⑤ 不可抗力에 대한 免責

URC 322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과 變함이 없다. 즉, 銀行은 天災地變이나 暴動이나 市民騷擾, 反亂, 戰爭 등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 免責이다.

(9) 支給條件

推尋銀行은 推尋指示에 따라 遲滯없이 推尋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만약에 遲延이 있는 경우에 遲延利子를 銀行은 負擔하여야 한다. 역시 여기에서도 “遲滯없이 支給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紛爭의 소지가 남는다.

推尋銀行은 推尋代金の 支給을 오직 推尋依賴銀行을 위해서만 支給한다.<sup>58)</sup> 즉, 推尋銀行은 달리 합의한 바가 없으면 推尋依賴銀行 이외의 어떠한 當事者를 위해서도 支給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는 推尋과 관련한 詐欺를 防止하고 엄격한 法的要件을 回避하기 위한 돈세탁(money laundry)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條項이다.<sup>59)</sup>

支給은 支給地의 內國通貨든 外國通貨든 관계없이 推尋指示書에서 정하고 있는 通貨로 가능하나, 推尋指示書에서 정한 方法대로 즉시 處分 또는 送金

57) URC 522 Art. 14.b: 신규.

58) URC 522 Art. 16.b: 신규

59) ICC Comments on URC 522.

可能해야 한다. 즉, 이러한 支給은 支給人이 支給地 國家의 적절한 外換統制承認을 득한 후에 推尋依賴人이나 推尋依賴銀行에게 송금이 가능한 支給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國家에는 外換統制規定이 있기 때문에 支給人은 事전에 이러한 外換統制承認을 득한 支給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推尋指示書에서 外換統制承認증의 內國通貨預金에 대해서 書類의 引渡가 가능한지 또는 단지 送金이 승인된 資金에 대해서만 書類의 引渡가 가능한지를 表示하여야 한다.<sup>60)</sup> 後者の 경우에는 약간의 實務的인 問題가 제기된다. 즉, 一般的으로 外換統制承認을 받는 데는 時間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到着한 物品이 引渡되지 못함으로써 危險하에 놓일 염려가 있다.

또한 貨換推尋의 경우에는 推尋指示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無擔保推尋의 경우에는 支給地의 有效한 法律에 의해 許容되는 경우에 分割支給이 허용되지만 어느 경우에도 書類는 반드시 全額支給이 이루어진 후에 引渡되어진다.

#### (10) 利子, 手數料 및 費用

推尋과 관련하여 利子, 手數料 및 費用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항상 분쟁거리가 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이다.

利子は 推尋指示書에서 명시적으로 利子を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提示銀行은 利子の 推尋없이 書類를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利子を 포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支給人이 利子の 支給을 拒絶하면 提示銀行은 書類를 引渡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遲延에 대해서는 責任을 지지 아니하지만 지체없이 전신이나 긴급한 수단을 이용하여 推尋指示書를 송부해 온 當事者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61)</sup>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遲延의 문제이다. 따라서 推尋依賴人은 賣買契約時에 이에 대한 문제를 支給人(買受人)과 명확하게 약정하는

60) ICC Comments on URC 522.

61) URC 522 Art. 20.

일이 이러한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手數料 및 費用의 경우에도 利子와 마찬가지로 推尋指示書에서 명시적으로 포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提示銀行은 그러한 手數料나 費用의 支給을 받지 아니하고 書類를 引渡할 수 있다. 명시적인 포기불가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利子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 개정 URC 522에서는 銀行에게 어떠한 指示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手數料나 費用의 선불을 요구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고 있다.<sup>62)</sup>

경우에 따라서 推尋銀行이 關稅나 運賃 등을 推尋依頼人/推尋依頼銀行을 대신하여 支給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클 수가 있으므로 先拂을 요구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推尋依頼人所在地國家의 外換統制가 엄격하여 資金의 送金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11) 換어음 · 約束어음<sup>63)</sup>

國家나 地域에 따라서는 支給人이 引受시에 어음상에 행한 서명의 확인뿐만 아니라 그 서명의 權限까지도 銀行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세계 전지역의 慣習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署名의 眞正性이나 署名의 權限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4)</sup> 실제로 銀行은 支給人과 상시 去來關係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음상 署名의 確認義務를 은행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不合理하다고 개정작업부(working party)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銀行慣行은 어음 引受에 대하여 推尋書類가 引渡되면 輸入貨物의 所有權이 讓渡된다는 측면에서 어음상에 捺印된 署名印鑑이 銀行에 신고된 提出印鑑과

62) URC 522 Art. 21.d: 신규.

63)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서이며,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서이다.

64) URC 522 Art. 22.

정확히 일치하는가의 與否를 확인하고 推尋書類의 引渡可否를 決定하게 된다.<sup>65)</sup> 그러나 이 때의 서명감은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銀行과의 去來에서 申告하여 登錄된 提出印鑑이면 充分하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어음법은 서명(signature)만으로 어음행위의 效力을 認定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자필서명은 效力을 인정받을 수 없다.<sup>66)</sup>

또한 어음의 발행을 推尋銀行이나 提示銀行 앞으로 하는 慣習도 있었으나 이는 전지역에 걸친 慣習이 아니며, ICC에서는 달리 約定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와 같이 推尋銀行이나 提示銀行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 (12) 拒絶證書

支給拒絶證書는 어음의 遡求權行使의 원인이 되는 引受拒絶 또는 支給拒絶의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로 公證人이나 집달관에 의해 작성되는 공증서류이다. 이와 같은 拒絶證書는 推尋指示書에서 명확하게 指示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되며 拒絶證書의 作成과 관련된 手數料 및 費用은 推尋指示書를 송부해 온 當事者의 負擔으로 한다.<sup>67)</sup> 그러나 이러한 어음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지법을 準據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慣例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어음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음법상의 拒絶證書에는 引受拒絶證書와 支給拒絶證書의 두 가지가 있다.

引受拒絶證書를 作成하기 위해서는 어음상의 引受期限內 引受를 위한 提示<sup>68)</sup>가 있어야 한다.<sup>69)</sup> 어음의 提示는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접수한 원형 그대로

65) 경남은행, 주택은행 실무지침.

66)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필서명에 의해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67) URC 522 Art. 24.

68) 실무에서 이러한 제시는 우편에 의한 도착통지서의 발송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도록 한다.

69)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로를 提示하여야 한다. 이러한 提示는 引受期限內 몇 번이라도 引受提示를 할 수 있고, 한번 引受拒絶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즉시 引受拒絶證書를 작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70)</sup> 그러나 引受拒絶證書는 引受提示期限內 작성하여야 한다.<sup>71)</sup>

支給拒絶證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支給拒絶의 有無를 결정하기 위한 적법한 支給提示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不可抗力이 만기일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支給提示를 하지 않고 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sup>72)</sup> 支給拒絶의 요건은 支給人이 어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支給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支給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支給人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支給人의 不在, 所在不明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支給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支給拒絶證書는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일람후정기출급의 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그리고 일람불어음의 경우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람불어음인 경우에는 제시된 때가 어음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支給拒絶證書를 작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問題點이 있을 수 있다.<sup>73)</sup> 이와 같이 引受拒絶證書나 支給拒絶證書의 작성기한이 극히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推尋銀行이나 提示銀行은 유효한 遡求權행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拒絶證書의 작성의뢰를 해야 할 것이다.

### (13) 豫備支給人(Case-of-Need)

만약에 支給拒絶이나 引受拒絶의 경우에 豫備支給人으로 행동할 대표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推尋指示書에 그 豫備支給人의 권한을 완전하게 나타내

7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3, p. 305.

71) 한국 어음법 제44조 1항.

72) 한국 어음법 제54조 4항.

73) 실무에서는 D/P 거래에서 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결제서류만을 송부하여 추심의 피하는 사례도 있고, 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1995, pp. 204~205).

어야 한다. 推尋指示書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銀行은 豫備支給人으로부터의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sup>74)</sup>

만약에 推尋指示書에서 “In case of need refer to ○○ Co. Whose instruction you are authorize to follow without reserve.”라고 나타나 있으면, 여기에 지명된 상사는 관계서류의 推尋에 推尋依頼人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推尋銀行은 이러한 指示에 따라야 한다.<sup>75)</sup> 어음이 引受 또는 支給拒絶이 되는 경우에는 物品의 保全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4) 推尋結果의 通知

推尋銀行이 推尋結果를 통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URC 322에서는 가장 빠른 우편을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가장 빠른 항공우편을 이용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개정규칙 URC 522에서는 推尋銀行의 選擇權으로 남겨 두면서 그 비용은 推尋을 송부해 온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6)</sup> 이는 우편보다 신속한 電信과 같은 通知方法이 보다 一般化되고 있기 때문에 우편통지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그 選擇權을 推尋銀行에게 줌으로써 보다 신속한 通知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補完되었다.

支給이나 引受가 행해진 후에 遲滯없이 推尋銀行은 支給이나 引受의 通知를 해야 하며,<sup>77)</sup> 提示銀行은 支給拒絶이나 引受拒絶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유

74) URC 522 Art. 25.

75) 미국 통일상법전하에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거절된 경우(upon dishonor), 제시은행은 어음상에 지명된 예비지급인으로서의 중재자(referee)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의 성실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제시은행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제시은행은 시의적절하게 접수된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 이외에 서류에 포장된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UCC § 4-503).

76) URC 522 Art. 26.b.

77) 인수통지서에는 인수일자, 인수금액, 만기일 등이 포함되며, 지급통지서에는 추심금액, 적절하게 공제한 수수료, 지출금, 비용 및 그 자금의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수통지서나 지급통지서는 일반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



를 확인하여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이러한 支給拒絶이나 引受拒絶의 通知를 받은 推尋依賴銀行은 향후의 書類의 取扱과 관련하여 적절한 指示를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sup>78)</sup> 60일 이내에 追加 指示가 없는 경우에 推尋銀行은 書類를 推尋依賴人에게 返送한다. 이 기간은 종전 규칙 URC 322에서 90일이던 것이 60일로 短縮變更되었으며, 또한 URC 322에서 推尋依賴銀行은 그러한 通知를 상당한 기간내에 한다는 규정과 함께 90일의 通知期限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항의 転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번 改正 URC 522에서 상당한 기간(within a reasonable time)이라는 文구를 삭제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結論 및 要約

지금까지 改正 URC 522의 內容과 약간의 問題點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79년 이후로 사용되어져 온 URC 322는 이제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變化된 貿易慣習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條項의 解釋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規則을 貿易關聯 各種 規則의 改正과 보조를 같이 하여 개정함으로써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問題點들을 제외하고는 實務適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變更된 內容을 명확하게 把握하여 신규칙의 적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C 522에서 改正되고 추가된 主要 新規內容을 要約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準據文言의 삽입조건을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Art. 1 a, Art.

입상에 통지, 1부는 추심의뢰은행에게 통지, 1부는 추심은행에 보관한다.  
78) URC 522 Art. 26.c.3: URC 322에서 90일이던 것이 60일로 변경됨.

4. a).

② 推尋去來에 참여한 銀行의 地位에 대해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指示履行與否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Art. 1.b).

③ 書類 分類內容을 조정했다(Art. 2b). 金融書類 중에 支給領收證(Payments Receipt)을 削除하고, 船積書類(Shipping Documents)를 運送書類(Transport Documents)로 개칭함.

④ 推尋依賴書(Collection Order)를 推尋指示書(Collection Instruction)로變更하고 推尋指示書의 要件 및 記載內容을 명시했다(Art. 4).

⑤ 書類의 提示期間과 관련하여 최초의(first), 신속한(prompt), 즉시의(immediate)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Art. 5.b).

⑥ D/P Usance의 概念을 명확히 했다(Art. 7.c).

⑦ 指示를 送付한 銀行의 免責을 규정했다(Art. 11.b).

⑧ 書類의 有效性에 대한 銀行의 免責을 규정했다(Art. 13).

⑨ 指示를 확인하기 위한 遲延에 대한 銀行의 免責을 규정했다(Art. 14.b).

⑩ 推尋銀行의 推尋代金の 支給은 推尋依賴銀行을 위해서만 한다고 규정했다(Art. 16.b).

⑪ 銀行은 指示履行에 앞서 所要手數料와 費用의 先拂請求權을 가진다고 규정했다(Art. 21.d).

⑫ 支給拒絶이나 引受拒絶의 通知를 받은 推尋依賴銀行의 향후 書類 取扱에 관한 指示期限을 60일로 短縮規定했다(Art. 26.c).<sup>79)</sup>

---

79) 종전 규칙에서는 90일이었다.

## 參考文獻

- 姜元辰, 信用狀論, 博英社, 1994
- 大韓商工會議所, 1993年 改正 貨換信用狀 統一規則 및 慣例, 1993
- 朴大衛, 信用狀, 法文社, 1994
- 裴勇元, 信用狀論, 貿易經營社, 1992
- 孫珠瓚, 商法(下), 博英社, 1994
- 梁暎煥, 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4
- 梁暎煥, 吳元爽, 貿易商務論, 三英社, 1994
- 梁暎煥, 吳元爽, 徐正斗, 信用狀論, 三英社, 1994
- 林泓根, 貿易信用狀, 三英社, 1981
- 大韓商工會議所, 國際貿易去來類型의 變化와 對應方案, 1994
- 韓國貿易協會, 第5次 改正 貨換信用狀에 관한 統一規則, 慶南, 貿易協會 慶南  
支部, 1993
- 慶南銀行 實務指針, 1994
- 住宅銀行 實務指針, 1995
- 及川竹夫, 信用狀取引の實務,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1984
- 桐谷芳和, 信用狀統一規則の解説, 東京, 經濟法令研究會, 1993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東京, 實業之日本社, 1987
-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東京, 有斐閣, 1986
- 朝岡良平, 逐條解說信用狀統一規則, 東京,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 Charles del Busto, *UCP 500 & 400 Compared*, Paris, ICC, 1993
- Geoffrey C. Hazard, *Uniform Commercial Code*, 12th ed., Pennsylvania,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1
- Gutteridge, H.C. &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 Credits*, 7th ed., London, Europa Publications, 1984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 5th ed., New York, Ronald Press, 1974
- Helbling, J., *Guide to Documentary Transactions in Foreign Trade*, Switzerland, Union Bank of Switzerland, 1985
- Kurkella, Matti, *Letters of Credit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UCC, UCP and Law Merchants*,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1985
- Schmitthoff C.M.,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1990
- Todd, Paul,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Lloyd's of London Press, 1990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ICC No. 522) & General Comments of ICC Working Party.
- Ventris, F.M., *Banker's Documentary Credits*, 3rd ed, London, Lloyd's of London Press, 1990